

# 창의인재교육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) 부설 “창의인재교육연구소”라 칭하고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소는 이론과 실제와의 연계를 통한 유아창의성 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. 특히 학술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장을 가짐으로써 창의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으며, 유아교육현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
2. 학회지 및 연구소지 발행
3.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타 창의성 관련 사업

## 제2장 조 직

**제4조**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연구위원 약간인
3. 운영위원 약간인
4. 조교 1인

**제5조**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유아교육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위원,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**제6조**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** (직무) 본 연구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각 연구위원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④ 조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**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** (소집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재정 및 회계

**제10조**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교 연구지원비로 충당한다.

**제11조**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# 부 칙

①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
③ (시행일) 1. 본 규정은 2004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